

수 신 : 여 연

참 조 : 조영숙실장님

제 목 : 성매매방지법 청원안 중 추가조항문안송부

발 신 : 이 찬 진 변호사

귀 단체의 요청에 따라 성매매업소중 형사처벌된 업주에 대한 신상관리와 이를 통한 동종, 유사업종 개설금지를 위한 법률안 초안을 다음과 같이 작성,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.

다 음

1. 청원안 중 행정처분 조항에 추가하여,

21조(행정처분) ①관할 시, 군, 구청장은 영업으로 성매매 행위의 장소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장소로 제공되는 장소에 관하여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 대하여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을 제외한 기타 제12조, 13조, 제14조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그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 및 장소에 대하여 시설 등 폐쇄명령,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행정처분의 종류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여성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③수사기관은 수사 결과 제1,2항의 범죄행위의 장소로 제공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시장, 군수, 구청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
④폐쇄명령을 받은 자 및 그 소유자는 같은 장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유사 업소를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개설할 수 없다.

5.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로부터 3년간, 기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동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동종 또는 유사 업소를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개설할 수 없다.

6. 수사기관은 제12,13,14조의 범죄행위자의 인적 사항 및 조치결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상자료를 전산관리하고 그 내용을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야 한다.

7. 각 지방자치단체는 유흥접객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소에 대한 인,허가 및 신고와 관련하여 해당자가 제5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.

이상과 같은 5-7항을 참조하기 바랍니다.

2002. 4. 26.

이 찬 진